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20080100485]
최초등록 [2008. 09. 11.]
최종등록 []

홈페이지
www.ibusiness.co.kr
대표 이메일
biz@ibusiness.co.kr

[르호봇]

정 보 공 개 서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303호(도화동, 공덕빌딩)]

대표번호: [1544-6154]

담당: 사업총괄본부 [070-8015-7977]

팩스 : [02-3275-224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303호(도화동, 공덕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5.1	2009.5.1.	목영두	1544-6154	02-3275-2241
	법인등록번호	110111-4089119	사업자등록번호	107-87-19868	

※르호봇 개인사업자(1998.10.10일 설립)로 해당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9.5.1일부터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로 브랜드 양수도 하여 사업 진행중임.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목영두	르호봇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303호(도화동, 공덕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목영두	1544-6154	02-3275-224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광희	르호봇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303호(도화동, 공덕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목영두	1544-6154	02-3275-224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신치호	르호봇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303호(도화동, 공덕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목영두	1544-6154	02-3275-224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르호봇]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르호봇	▲ 르호봇(Rehoboth)의 어원 구약성경의 인물인 이삭의 우물 이름에서 유래된 '르호봇(Rehoboth)'은 원래 넓은 장소라는 의미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삭이 모든 시련을 극복한 후 이곳에서부터 번성했다는 기원이 있습니다. " He named it Rehoboth, saying " Now the Lord has given us room and we will flourish in the land " (Genesis 26:22) 이는 자금, 정보, 인력등 모든 것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호 사업가에게 좋은 터전과 도움, 희망을 제공하려는 르호봇의 비전과 일치합니다.
상 호	르호봇 OO 센터	www.ibusiness.co.kr
상표(서비스표)	Rehoboth 르호봇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0936000000
		르호봇은 소호, 창업, 1인창조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종합 오피스 시스템입니다.
광 고	상동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0936000000

“르호봇은 국내 최고,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르호봇은 전국에 비즈니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NO 1. 토종 브랜드입니다. 르호봇은 1998년 공유오피스의 개념을 국내에 도입한 이후 전국 22개 센터 및 약 4,830개의 입주사를 확보하며 비즈니스센터 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르호봇의 주요특징]

- 효율적 시스템 : CMS시스템, 회의실 예약 R멤버스 전용 어플 및 사이트 보유
- VISA 제도 : 전국 22개 센터의 공용공간을 무료로 사용 가능
- 업무지원서비스 : 세무, 법률, 특허, 노무 등
- 기타 입주사 지원서비스 : 건강검진 서비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457,100	17,493,336	-9,036,235	3,470,802	-492,267	-2,303,448
2022년	8,582,176	18,196,585	-9,614,408	1,700,104	49,861	-578,173
2023년	8,794,610	19,188,179	-10,393,570	991,013	-183,039	-779,161

그 근거자료는 [별지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호봇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표상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목영두	대표	2015. 3. ~ 현재.	(주)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대표	경영, 전략 총괄
	박광희	이사	1998. 10. ~ 2015. 3.	(주)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대표	
			2015. 3. ~ 현재	(주)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사	
	신치호	이사	2020. 10 ~ 현재	(주)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Rehoboth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3.10.17 출원 2014.11.11 등록	4120130039645 410304112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4.11.11
르호봇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4.03.04 출원 2015.04.22 등록	4120140008099 410320024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5.04.22
R 스마트오피스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9.10.29. 출원 2020.04.06. 등록	4020190165186 401593739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30.04.06
ANYWORK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3.10.17 출원 2014.10.06 등록	4120130039651 410301062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4.10.06
애니워크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4.06.25 출원 2015.03.06 등록	7120140000111 410313753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5.02.24
SMARTSOLO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3.10.17 출원 2014.09.30 등록	4120130039652 410300542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4.09.30
스마트솔로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4.05.07 출원 2015.03.03 등록	7120140000069 410311074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5.01.26
OneTwOffice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4.01.15 출원 2014.10.17 등록	4120140001719 410302144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4.10.17
원투피스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4.01.15 출원 2014.10.17 등록	4120140001718 410302143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4.10.17
아이비즈폰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4.03.04 출원 2014.12.02 등록	4120140008097 410306046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4.12.02
BizWin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3.04.26 출원 2014.02.28 등록	4120130016528 410281764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4.02.29
비즈윈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3.04.26 출원 2014.02.28 등록	4120130016529 410281823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4.02.29
Prime Business Center Rehoboth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05.07.27 출원 2006.05.23 등록	4120050017472 410132301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6.05.23
Renaissance Society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5.04.21 출원 2016.02.18 등록	4120150018608 410349085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6.02.18
R Society	가맹센터 CI 광고 및 홍보물	2015.04.21 출원 2016.02.18 등록	4120150018610 4103490860000	(주)르호봇비즈 니스인큐베이터	2026.02.18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르호봇]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1999년 6월 10일

2. [르호봇]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르호봇	르호봇	박광희	1999.6.10.~2009.4.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주택건설회관 6층
(주)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박광희	2009.5.01.~2015.3.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율촌빌딩 3층
(주)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비즈니스센터	목영두	2015.3.03.~2017.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율촌빌딩 3층
(주)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비즈니스센터	목영두	2017.10.13.~2019.09.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9층(도화동, 공덕빌딩)
(주)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목영두	2019.09.17 ~2023.10.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0층(도화동, 공덕빌딩)
(주)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목영두	2023.10.31 ~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1303호(도화동, 공덕빌딩)

3. [르호봇] 업종

영업표지	업종	
르호봇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서비스	사무공간 임대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르호봇]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7	44	3	34	31	3	22	21	1
서울	34	31	3	25	22	3	17	16	1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1	1	-	1	1	-	1	1	-
대전	2	2	-	2	2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8	8	-	4	4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르호봇]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4	2	1	1	1	44
2022	44	0	2	11	0	31
2023	31	1	4	7	0	21

6. [르호봇]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르호봇]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21	293,900	2,143	488,552	3,898	140,438	1,274	18개점 대상
서울	16	319,451	2,295	488,552	3,898	219,346	1,274	13개점 대상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							
인천	-							
광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세종	-							
경기	2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충북	-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위의 표에서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당사만의 전산관리시스템인 CMS 시스템에 미반영 되어있는 일부 부가서비스 및 신규 출시 상품의 매출을 제외한 실제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상기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중 CMS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 추정 자료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의 경우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서울시 마포구 도화동)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르호봇]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1개	2,74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르호봇]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43,516	43,516	-	
광고	비공개	비공개	43,516	43,516	-	
판촉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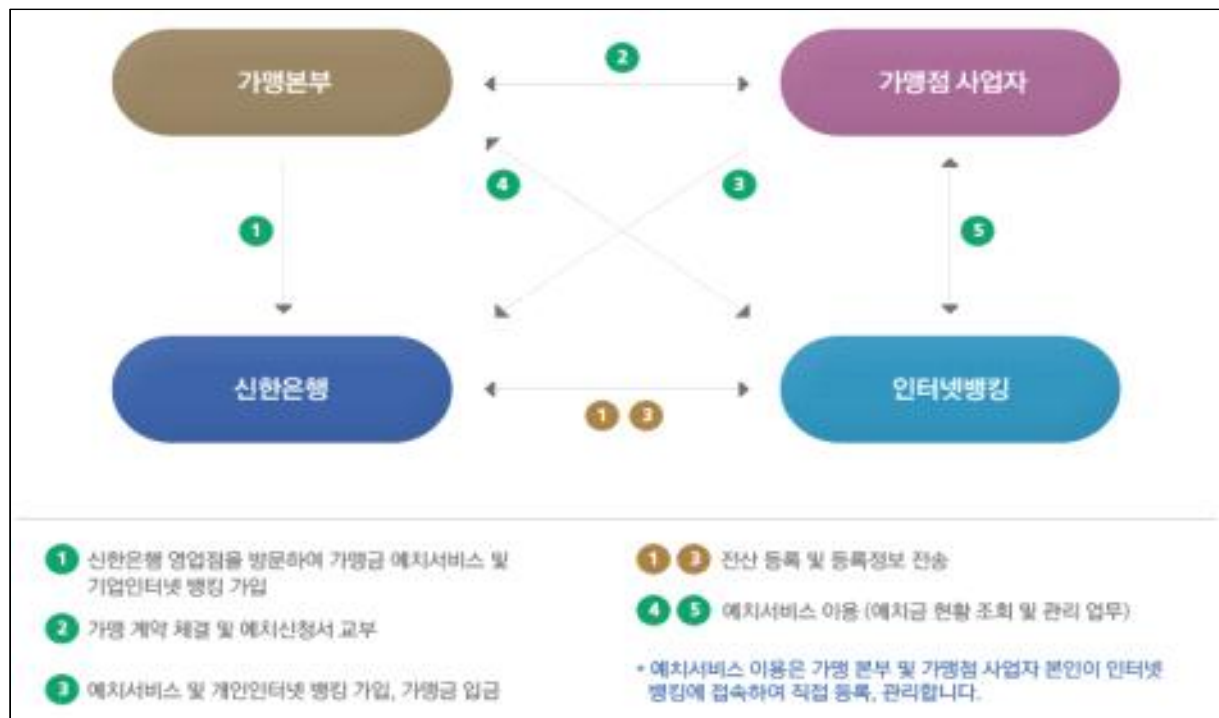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에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를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연락처
신한은행	여의도금융센터 멀티채널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주택건설회관 1~2층	02-756-0506 (교환 3865)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본인 계좌 개설시의 필요서류는 ①가맹금 예치신청서 (가맹본부 발행) ②실명확인증표이며, 대리인 신청시는 ①가맹금 예치신청서 (가맹본부 발행) ②실명확인증표 ③위임장 ④개인인감 증명서 ⑤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IV. 1.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참조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하여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르호봇]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보증금 등 임대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당사 기준에 의거 전용면적에 따라 변동가능)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0,800]				비즈니스센터 타입
가맹비	22,000	계약 체결 당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최초 입회비 성격의 금액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맹비로 전환/ 전용면적495㎡ (약150평)까지
초기교육비	3,300	계약 체결 당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초기 홍보판촉비	5,500	계약 체결 당일	공급 또는 실행 전 해지 시	영업개시를 위하여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점의 전용면적이 495㎡(약150평)를 초과하는 경우 3.3㎡(1평)당 일금 일십만원 (₩100,000-부가세별도)씩 추가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2,800]				프라임비즈니스 센터 타입
가맹비	44,000	계약 체결 당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최초 입회비 성격의 금액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맹비로 전환/ 전용면적495㎡ (약150평)까지
초기교육비	3,300	계약 체결 당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초기 홍보판촉비	5,500	계약 체결 당일	공급 또는 실행 전 해지 시	영업개시를 위하여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점의 전용면적이 495㎡(약150평)를 초과하는 경우 3.3㎡(1평)당 일금 일십만원 (₩100,000-부가세별도)씩 추가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9,800]				원투피스센터 타입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당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최초 입회비 성격의 금액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맹비로 전환/ 전용면적264㎡ (약80평)까지
초기교육비	3,300	계약 체결 당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초기 홍보판촉비	5,500	계약 체결 당일	공급 또는 실행 전 해지 시	영업개시를 위하여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점의 전용면적이 264㎡(약80평)를 초과하는 경우 3.3㎡(1평)당 일금 일십만원 (₩100,000-부가세별도)씩 추가됩니다. 전용면적이 396㎡(약120평)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별도 협의 후 비즈니스센터 타입의 가맹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500]				스마트오피스 타입
가맹비	13,200	계약 체결 당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최초 입회비 성격의 금액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맹비로 전환/ 전용면적330㎡ (약100평)까지
초기교육비	3,300	계약 체결 당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초기 홍보판촉비	5,500	계약 체결 당일	공급 또는 실행 전 해지 시	영업개시를 위하여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점의 전용면적이 330㎡(약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3.3㎡(1평)당 일금 일십만원 (₩100,000-부가세별도)씩 추가됩니다. 전용면적이 396㎡(약120평)을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별도 협의 후 비즈니스센터 타입의 가맹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 당일	가맹금 로열티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보증보험대체 가능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비즈니스센터 타입)	금액
합계	35,800
가맹비	22,000
초기 교육비	3,300
초기 홍보판촉비	5,500
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5,000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프라임비즈니스센터 타입)	금액
합계	57,800
가맹비	44,000
초기 교육비	3,300
초기 홍보판촉비	5,500
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5,000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원투피스센터 타입)	금액
합계	24,800
가맹비	11,000
초기 교육비	3,300
초기 홍보판촉비	5,500
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5,000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스마트오피스 타입)	금액
합계	27,000
가맹비	13,200
초기 교육비	3,300
초기 홍보판촉비	5,500
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5,000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비즈니스센터 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300,000	2,500		비즈니스센터 타입
인테리어	가맹본부	213,600	1,78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396㎡(예전 표기 120평) 기준
가구	가맹본부	40,800	34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냉난방 및 네트워크	가맹본부	43,200	36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간판 및 사인	가맹본부	2,400	2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2) 프라임 비즈니스센터 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375,000	2,500		프라임비즈니스 센터 타입
인테리어	가맹본부	267,000	1,78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495㎡(예전 표기 150평) 기준
가구	가맹본부	51,000	34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냉난방 및 네트워크	가맹본부	54,000	36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간판 및 사인	가맹본부	3,000	2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3) 원투피스센터 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212,500	2,500		원투피스센터 타입
인테리어	가맹본부	151,300	1,78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280㎡(예전 표기 85평) 기준
가구	가맹본부	28,900	34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냉난방 및 네트워크	가맹본부	30,600	36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간판 및 사인	가맹본부	1,700	2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4) 스마트오피스 타입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200,000	2,500		스마트오피 스 타입
인테리어	가맹본부	132,000	1,6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306㎡(예전 표기 100평) 기준
가구	가맹본부	24,000	3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냉난방 및 네트워크	가맹본부	42,400	53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간판 및 사인	가맹본부	1,600	20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점포시설 중 전력증설공사, 건물외부간판 설치공사 등 모든 센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시설의 시공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귀하가 부담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총괄본부 (전화:070-8015-7977)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33조에 의거하여 가맹본부에서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시스템의 효과성,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채용, 파견, 상주시킨 본부 인력 상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가맹점의 운영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가맹본부는 면담 및 정황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비즈니스센터 타입)	가맹본부	매월 2,200	익월 5일	반환되지 않음	기 사용 비용(후불)	396m ² (120평) 기준/면적에 따라 다름
로열티(프라임 비즈니스센터 타입)	가맹본부	매월 2,200	익월 5일	반환되지 않음	기 사용 비용(후불)	396m ² (120평) 기준/면적에 따라 다름
로열티(원투피스센터 타입)	가맹본부	매월 1,100	익월 5일	반환되지 않음	기 사용 비용(후불)	264m ² (80평) 기준/면적에 따라 다름
로열티(스마트센터 타입)	가맹본부	매월 1,100	익월 5일	반환되지 않음	기 사용 비용(후불)	264m ² (80평) 기준/면적에 따라 다름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분담기준에 의거	익월5일	반환되지 않음	-	
추가광고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해당월 말일	사전 협의하에 미 진행시	-	추가 광고 진행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 실시 10일 이전	사전 협의하에 교육 미 진행시	-	교육 필요시
시설,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협의	교체보수 실시전일	사전 협의하에 미 진행시	-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리모델링 공사 실시일	사전 협의하에 미 진행시	-	4-5년 시점에 협의
LG IoT 솔루션 사용료	가맹본부	매월 275,000원 ~300,000원	익월 5일	반환되지 않음	기 사용 비용(후불)	LG IoT 솔루션 적용센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한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	-	

로열티는 가맹점의 기준 전용면적을 초과할 경우 기준 대비 16.5m²(약 5평)당 일금 일십일만원(₩110,000)<부가세포함>씩 인상됩니다. 단, 로열티의 최소 금액은 비즈니스센터 타입, 프라임비즈니스센터 타입의 경우 일금 이백이십만원(₩2,200,000)<부가세포함>, 원투피스센터 타입, 스마트센터 타입의 경우 일금 일백일십만원(₩1,100,000)<부가세포함>입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비즈니스센터, 프라임비즈니스센터, 스마트오피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재가맹비 (비즈니스센터 타입 및 프라임비즈니스센 터 타입	11,0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신규 가맹점 모집 기회 비용	신규점의 1/2 수준

(2) 원투피스센터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재가맹비 (원투피스센터 타입 및 스마트오피스 타입	5,5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신규 가맹점 모집 기회 비용	신규점의 1/2 수준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

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는 당사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양도 · 이전 ·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임의로 점포운영을 폐지 ·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운영권 양도 시 2개월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당사는 동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르호봇]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이행보증금, 교육비 및 행정적 실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동일한 가맹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르호봇]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르호봇]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르호봇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르호봇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르호봇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르호봇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Smart-Soloffice	가맹본부의 경영정책 준수 및 이행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절차 준용
Soloffice			
1인실/2인실/3인실/4인 실/5인실 이상			
Anywork			
회의실 단기임대 및 비즈넷카페(BizNCafe)			
전화비서(iBizPhone)외 기타서비스(BizServ)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고객에

게 본사의 경영정책에 따른 상품 수준의 준수와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저촉되는 업종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Smart-Soloffice	업종의 특성상 주변시세, 수요현황 등에 따라 가맹점별로 권장가격 산출	영업개시일전 직접 가격기준표 전달	
Soloffice			
1인실/2인실/3인실/4인실/5인실 이상			
Anywork			
회의실 단기임대 및 비즈넷카페(BizNCafe)			
전화비서(iBizPhone)와 기타서비스(BizServ)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정 공간을 작게 분할하여 고객에게 임대(전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경영정책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ex) 사업자주소제공, 고정, 공유형 업무데스크 제공 ○ 가맹본부의 BizNCafe, iBizPhone, BizServ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르호봇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반경 5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르호봇]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
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르호봇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
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1	9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르호봇]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가맹점의 부동산 임대차잔금일로부터 [5]년이며 갱신시 계약 기간은 [3]년 연장됩니다. 단, 상호협의를 따라 가맹계약기간은 공사완료 확인서 날인일로부터 5년으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5조 ④항 가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5조 ④항 나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5조 ④항 다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5조 ④항 라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25조 ④항 마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운영방식,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품질 기준 등의 시정 및 개선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6조 ①항 가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상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로열티 등)을 연체하는 경우	26조 ①항 나
○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액 및 손익을 2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거나, 매일의 영업실적을 월 3회 이상 또는 매월의 운영현황보고를 2회 이상 가맹본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26조 ①항 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표준시설기준 유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6조 ①항 라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권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양도한 경우	26조 ①항 마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없이 7일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26조 ①항 바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을 계속 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6조 ①항 사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누 설한 경우	26조 ①항 아
○ 가맹점사업자가 불공정 거래행위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도 및 범죄 행위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의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26조 ①항 자
○ 가맹계약서 제15조 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6조 ①항 차
○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6조 ①항 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6조 ②항 가
○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26조 ②항 나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 업을 경영할 수 없게된 경우	26조 ②항 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 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 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6조 ②항 라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 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6조 ②항 마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6조 ②항 바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6조 ②항 사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6조 ②항 아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6조 ②항 자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내용		41조 ①항
○ 현행법의 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41조 ①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특약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특약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특약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 영 기준을 준수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총괄본부 (070-801 5-7977)

가맹 계약 존속기간중,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이행보증금, 양도에 따른 행정적 실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영업의 가맹계약 유효기간은 양도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잔여 가맹계약 존속기간에 한정하며, 이후, 영업장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묵시적인 가맹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갱신 가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양도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3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피상속인,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 사업자, 대리인, 가맹본부의 대리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대리 운영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협의 후 결정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기간과 계약종료(양도 포함) 후 2년 동안 귀하가 [르호봇]과 동일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제3의 가맹본부에 가맹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르호봇]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매니저 근무시간: 09:00~18:00)	365일 (매니저 근무일: 평일)	문의: 사업총괄본부 (070-8015-797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선택적 직접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센터(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르호봇]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광고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기본 홈페이지 키워드 광고	가맹점 부담 외 전액	가맹점별 비용은 직접 부담	개별가맹점 세부키워드 광고 비용은 해당 가맹점별이 부담한다.	2009년 이후의 통합 로열티 가맹점 기준사항이며, 이전 가맹점은 가맹계약시 기준에 따라 부담
전국 규모 및 지역 단위의 광고, 온라인 광고 등	광고비 20%	광고비 80%(가맹사업자 전체가 해당 금액을 균하게 부담)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추가 광고행사	협의	협의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 담액 제시 → 가맹점 동의(미 동의 가맹점은 행사에서 제외)	대중매체 광고 및 이벤트 행사 등
개별 행사	행사 내용에 따라 달라 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 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수시 행사 협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관측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동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6조[동종영업 금지의무 등]
②“을”은 가맹계약 존속 기간과 계약종료(양도 포함) 후 2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갑”의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본부를 설립하거나 동종의 제3의 가맹본부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가맹비의 10배 금액과 남은 계약기간의 로열티 5배 금액을 경영 등의 노하우 전수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배상한다. 단, 남은 계약기간은 최대2년까지로 한다.
가맹계약서 제17조[영업상 비밀준수]
④“을”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조 2항을 위반하거나 3항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반 가맹비의 5배 금액을 경영 등의 노하우 전수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배상한다.
가맹계약서 제28조[고객의 보호와 가맹본부의 책임]
⑤“갑”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⑥“을”은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갑”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계약서 제34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⑤“을”이 가맹점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은 양수 받은 가맹계약의 존속 중 및 양수 받은 가맹계약의 종료 후 2년(“을”, “병” 모두 “갑”과의 가맹계약에서 탈퇴하여 “병”이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 이후 2년) 동안 “갑”의 영업과 동종·유사 영업 및 “갑”의 가맹본부와 동일·유사한 업종의 가맹본부를 설립하거나 동종·유사의 제3의 가맹본부에 가입할 수 없다. “병”이 이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가맹비의 10배의 금액 및 2년의 영업금지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로열티의 5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배상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0~18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6개월 내외	[IV-1.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설명/상담	- 정보공개서,계약서 제공 및 가맹 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 계약체결 (정보공개서,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 후) - 홍보 및 마케팅 세부계획, 일정 점검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9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89~70	
현장 실측 및 현황 점검	- 현황자료 분석 및 특이사항 점검 - 레이아웃 도면/디자인 컨셉 시안 준비 - 일정에 의한 사전 홍보 및 마케팅활동	D-69~65	
도면 및 디자인컨셉 확정	- 도면 및 디자인 컨셉 확정 - 시공분야 내용 확인 및 분담 확정 - 세부 공정표 작성 및 확정	D-64~60	
착공 및 감리, 근무자 선발	- 세부 공정표에 따른 시공 및 감리(컨설팅) 진행 -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중간점검/예약 고객 확보 - 근무자(실장) 선발 준비 및 교육	D-59~30	
시공 및 공정감리-1	- 세부공정, 내용에 대한 시공점검 - 추가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D-29~18	
시공 및 공정감리-2	- 시공 공정상태 확인 및 보완 - 홍보 및 마케팅 활동 2차 중간점검 - 확보 고객 확인 및 영업개시 준비	D-17~6	
완공 및 점검 오픈 준비	- 세부시공내용 전반 점검 - 오픈 준비(기기 및 비품 입고) - 시스템 시험 가동 및 점검 - 가맹본부 시스템 확인 및 근무자 교육	D-5~1	
오픈-영업개시	- 오픈(주변 상권 집중 마케팅) - 전략 서비스 상품 홍보 (사전 시장 및 상권조사 자료 참조) - 공사 잔금 지급	D-day	
운영 및 관리지원 마케팅 활동	- 가맹본부 지원(마케팅/운영/관리) - 부정기 방문지원/관련 기관등 제휴, 협력추진	D+1~15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경영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르호봇]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 또는 센터 상주인력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르호봇]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비용은 가맹금에 포함)
보수 교육	2일	협의에 의함	매년 최소 2회 필수적으로 이수(별도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9조에 따라 영업 개시일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5조에 따라 가맹계약 종료 후 계약의 갱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프라임 삼성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삼성동 170-9) 덕명빌딩 16,17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8년 3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495,925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CMS 시스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총괄본부(070-8015-797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